

제 297 호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1972. 10. 17.
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

례

◎ 고 시

제 142 호 도시계획사업(아동공원) 실시계획인가 3

◎ 공 고

제 231 호 서울특별시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임원 해임..... 4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2 호

도시계획사업 (아동공원) 실시계획인가

1. 어린이 대공원 전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국 녹지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10. 16.

서울특별시 장

5. 아동공원 조서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

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산 3-8 림

외 48 필지 지내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종 류 : 공원시설

명 칭 : 어린이 대공원 조성사업

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착공예정년월일 : 1972. 11. 1

준공예정년월일 : 1973. 12. 31

공 원 명	위 치	면 적	비 고
능동아동공원	시내 성동구 능동 산 3-8 림 외 48 필지	338,091 (117,397) 평	전설부고시 493 호

6. 공원내 시설조서

시 설 구 분	전 체면적에 대한 비율	면.	적	위	치	비 고
		m ²	평			
기 본 시 설	20.1 %	78,149	23,640	별	첨현황도참조	
운 동 시 설	2.5	9,917	3,000	"		
유 회 시 설	6.8	26,447	8,000	"		
교 양 시 설	4.4	17,190	5,200	"		
조 경 시 설	5.8	22,479	6,800	"		
휴 양 시 설	0.3	992	300	"		
교 통 시 설	0.5	1,719	520	"		
관 리 시 설	0.5	1,983	600	"		
부 대 시 설	0.5	1,653	500	"		
자 연 녹 지	58.6	227,562	68,837	"		
계	100	338,091	117,397		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31 호

서울특별시 멘트가공
업협동조합임원해임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0조 제2
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아래
임원을 해임 조치하였기 서울특별시
단체감독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

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2. 10. 16

서울특별시 장

1. 조합명 : 서울특별시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

2. 주 소 : 서울특별시종로구묘동 203-1

3. 해임임원 : 이 사 장 김 경 배
상무이사 이 태 중
감 사 정 재 섭
감 사 이 문 순

4. 해임일자 : 72. 10. 16

5. 해임사유 :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
금 부당운용